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23일

다산면장  안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박 *형	박 *형 1965-04-19	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09-23